

신한BNPP유럽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(H)[주식-재간접형]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신설>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종류C-p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S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종류C-p수익증권 종류S-P 수익증권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39조 (보수)	제39조 (보수) ③ (생략) <신설>	제39조 (보수) ③ (생략) 9. 종류 C-p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5.5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8.4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0] 12. 종류 S-P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5.50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2.5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0]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40조 (판매수수료)	제40조 (판매수수료) ③ (생략) 3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-e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<신설>, 종류 C-w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, <신설> : 없음	제40조 (판매수수료) ③ (생략) 3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-e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 , 종류 C-w 수익증권, 종류 S 수익증권, 종류 S-P 수익증권 : 없음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41조 (환매수수료)	제41조 (환매수수료) ② (생략) <신설>	제41조 (환매수수료) ② (생략) 1. 종류 C-p, 종류 S-P : 없음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

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(2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(3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1)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C-p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S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종류C-p, S-P수익증권 : 환매수수료 없음
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3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(3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C-p 수익증권 - 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550% - 판매회사 보수 : 0.840% - 신탁업자 보수 : 0.030% - 일반사무관리 보수 : 0.015% 종류S-P 수익증권 - 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550% - 판매회사 보수 : 0.250% - 신탁업자 보수 : 0.030% - 일반사무관리 보수 : 0.015%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6월 30일)
3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6월 30일)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
-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신설>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가.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나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C-p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종류S-P 수익증권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종류C-p, S-P수익증권 : 환매수수료 없음
1. 종류C-p, S-P 수익증권의 신설 : 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	제2부 1. 보수 및 수수료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C-p 수익증권 - 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550% - 판매회사 보수 : 0.840% - 신탁업자 보수 : 0.030% - 일반사무관리 보수 : 0.015% 종류S-P 수익증권 - 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550% - 판매회사 보수 : 0.250% - 신탁업자 보수 : 0.030% - 일반사무관리 보수 : 0.015%
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제1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5년 6월 30일)